

* IDC 현황 : 수도권(34개), 비수도권(13개)

◎ 수도권 소재 IDC는 현재 적용중인 자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함(12.1.1일 시행)

* 자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은 '08.1월부터 시행중이며, 일반용 대비 3% 저렴

3. 전기 요금 조정 효과

■ 자식경제부는 금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전력피크 144만kW 감축이 가능하고 발전소 건설비용 1.1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■ 금번 요금 조정시 서민 경제를 고려하여 주택용요금을 동결하였으므로 소비자물가 영향은 없으며, 생산자 물가 0.116%p 상승, 제조업체의 원가는 0.076%p 상승함

* 산업용, 일반용, 주택용 전기요금을 각각 1% 인상시 생산자물가 연간 0.0274%p 상승(한국은행)

* 제조업 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1.17%(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, '10년)

4. 향후 계획

■ 지정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은 “자식경제부와 한전, 발전사 등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전력수급안정 대책과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올 겨울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음

■ 자식경제부는 향후에도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 과소비와 에너지 소비 구조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피크요금제 확대 등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

해상풍력 3대 강국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– 서남해 2.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–

문의 | 자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(02-2110-4911)

■ 자식경제부(장관:최중경)는 11.11일(금)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'20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'서남해 2.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'을 발표하고, 발전회사 및 풍력설비개발사들이 참여하는 "해상풍력 추진 협약식"을 체결함

■ 19년말까지 구축 예정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, 발전사 및 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상기 종합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◎ 먼저, 지속적인 국내시장 창출로 해상풍력 산업기반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,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한전 및 전력사, 시스템 및 부품기업, 연구소 등 참여기관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, R&D 지원 분야의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음

- ◎ 해상풍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상풍력단지와 풍력시스템의 설계 – 제작 – 시공 및 운영, 인증 등 공급사슬 전과정에 걸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 바,
 - 해상풍력 단지설계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Track record를 확보하여, 산업화 및 수출화 과정에서 애로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
- ◎ 정부지원 R&D는 해상풍력단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초점을 두고, 설비를 설치 시공(A/S 포함) 하고, ③신청가구는 매월 절약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웅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으로, 상환 완료후 잔여수명 기간 동안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운영될 계획임
 - 단지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풍력자원연구와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지지구조물 연구, 시공방법 개발 등을 중점 연구분야에 포함
 - * 다만 풍력시스템 및 단지에 대한 시험·성능 평가 기술, 시스템 설계 기술 등은 단기 확보가 어려우므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
 - * 해외 선진기관 협력 → 공동연구 → 기술확보 및 자체설계
- ◎ 이를 위해, '19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총 2,50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약 10조 2천억원 투자할 계획임
 - 1단계 : '14년까지 100MW 실증단지에 약 4천억원 투자
 - 2단계 : '16년까지 400MW 시범단지에 약 1조 6천억원 투자
 - 3단계 : '19년까지 2,000MW 해상풍력발전단지 추가 건설(8조 1,934억원 투자)
- 서남해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발표와 더불어, 지경부, 전라남·북도, 한전 및 발전사, 풍력시스템 공급사 등이 참여하는 “해상풍력 추진 협약”을 체결한 바, 주체별 주요 역할분담은 아래와 같음
- ◎ 지식경제부는 해상풍력개발계획 시행 및 행정적·정책적 지원
 - ◎ 전라남·북도는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와 계통연계 관련 인허가 및 민원해결 등에 적극 협력
 - ◎ 한전 및 발전6사는 SPC를 설립하고 풍력시스템사와 풍력 발전설비 공급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해상풍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
 - ◎ 풍력시스템 8개 공급사(두산중공업,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, 유니슨, 현대중공업, 효성중공업, DMS, STX중공업)는
 - '13년 중반부터 '14년까지 1단계 사업에 설치될 3MW ~ 7MW급 발전기 각각 2 ~ 3기를 개발·설치할 계획
 - ◎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해상풍력산업 경쟁력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, 에너지관리공단은 배후단지 조성, 성능검사기관 고도화 등 해상풍력인프라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
- 지식경제부 김정관 차관은 이 자리에서
 - ◎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세계적인 규모의 거대 국가사업이며
 - ◎ 향후 우리나라의 신국부창출을 견인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그 성공을 위하여 민·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
 - ◎ 동 사업을 계기로 국산 해상풍력 발전기 개발·인증·설치, 시공 등을 통한 Track Record를 확보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 및 선점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
- 세계 해상풍력 설치 용량은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3.55GW 수준이지만 4.0GW가 건설 중이고 승인된 계획도 15.9GW인 바, 2030년까지 건설규모는 총 239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*
 - * 출처 : Bloomberg New Energy Finance/League Table Result Book('11)
 - * 1GW규모 원자력발전소 약 1개 규모
- ◎ 특히, 최근에는 해상풍력강국인 유럽 국가들 외에 중국, 미국 등이 국가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선진국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임
 - * 유럽 : 영국, 덴마크 등을 중심으로 '20년까지 40GW, '30년까지 150GW 건설 계획
 - * 중국 : '10년 아시아 최초 해상풍력단지(상해, 102MW, 3MW×34기)를 완공하고, '30년까지 35GW로 확대 계획(현재 기승인용량 2.4GW)
 - * 미국 : '10년 동부해안에 해상풍력단지(Cape Wind, 3.6MW×130기) 건설을 처음으로 승인하였고, '30년까지 54GW 설치 전망

- 특히 우리나라 해상풍력산업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·중공업, 해양플랜트, 건설, 전기, IT 등 연관산업을 접목할 경우,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며,
- ◎ 협소한 국토여건을 감안시 육상풍력보다 환경파괴·민원발생이 적고, 대규모 단지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
- 참고로 2,50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량(연간 6,525GWh)은 약 139만가구, 556만명 수준의 도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서,
- ◎ 2011년 현재 부산시, 대전시, 포항시를 합친 전체 인구(556만명)의 전력소비를 충당하거나, 광주시 포함 전남북도 전체 인구(494만명)의 전력소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규모임
 - * 2011년 현재 인구수 : 부산시(355만명), 대전(150만명), 포항시(51만명), 광주시(147만), 전남도(172만명), 전북도(175만명)
 - * 가구당 연평균 사용전력량을 4,730kWh(0.54kW*8760), 빌전단지 이용율을 약 30%로 산출
- 또한 금번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 핵심 기술개발 및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능력 확보로 '20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강국 도약'
 - * 20년까지 누적 매출 42.4조원 및 약 7.6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

전기차 충전서비스, 수요관리 사업자 등록 개시 -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제48회 국무회의 통과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(02-2110-4675)

- 지식경제부(장관:최중경)는 금년 5월 24일 공포된 「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」의 시행령안이 11월 15일(화)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5일(금) 본격 시행된다고 밝힘
 - * 시행령 추진경과 : 관계부처협의(7.22~8.1) → 입법예고(7.27~8.16) → 공청회(8.29) → 규제심사(10.20) → 법제처 심사(11.8) → 차관 회의(11.10) · 국무회의(11.15)
- ◎ 이로써 지난해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기반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 되어 스마트 그리드 국가단위 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밝힘
-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6장 20개 조문으로 구성
- ◎ 특히,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,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,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등 사업자에 대한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,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한편,
 - *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: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·공급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
 - *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 : 빌딩 등 일정 구역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을 스마트그리드 기기를 통해 절감하고, 그 절감 전기를 되팔아 수익을 전기사용자와 배분
 - *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: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,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사업자
 - 스마트그리드의 보급확산·정책목표를 담은 5개년 기본계획수립, 스마트그리드 확산의 전초기지인 거점지구 지정 절차 등을 통해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음